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16. 12. 1. 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 속 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3. 제정이유

○ 충청북도 교육복지정책과 운영의 체계화와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,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보장과 폭넓은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북의 교육복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
(안 제3조)

○ 매년 교육복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

○ 교육복지 사업과 지원대상, 지원방법을 규정함(안 제6조~제8조)

○ 교육복지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9조)

○ 매년 교육복지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(안 제10조)

○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
(안 제11조~제13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교육복지정책과 운영의 체계화와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,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보장과 폭넓은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북의 교육복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,

-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충북의 교육복지사업이나 향후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, 지속 가능한 합리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이런 측면에서 교육복지시행계획 수립과 교육복지사업 내용을 명료화하고,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한 명시와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.